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4. 7.14(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 2014. 7. 2.
- 나. 제안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 다. 회부일자 : 2014. 7. 2
- 라. 상정일자 : 2014. 7. 10. (제216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 제안설명 : 행정관리국장 박송철
 - 검토보고 : 교육수석전문위원 한상환
 - 질의 및 토론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 가. 제안이유
 - 시민이 교육청의 조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의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 추가
 - 인천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업무와 법제업무를 정책담당부서에 배치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교육정책국” 과 “행정관리국” 의 명칭을 “교육국” , “행정국” 으로 변경(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 추가(안 제7조)
-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 중 “법제, 의회업무” 삭제(안 제7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국” 의 명칭을 간결하게 변경함으로써 시민이 교육청의 조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해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을 추가 시키고 인천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회업무와 법제업무를 정책담당부서에 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4년 7월 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주요검토내용

-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내용중 “교육정책국” 과 “행정관리국” 의 명칭을 “교육국” , “행정국” 으로 변경하는 것은 시민이 교육청의 조직을 쉽게 이해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 안 제7조의 행정관리국 소관 사무분장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업무를 추가하는 것은 효율적 인력관리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본 조례에서 사용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와 2014년 7월 1일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서 사용한 “근로자”의 명칭이 다른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안 제7조의 행정관리국 사무분장중 “법제, 의회업무”를 삭제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책담당 부서에 배치하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음

다만, 법제업무와 의회업무를 동시에 이관하고자 하는바, 이에 따른 업무연관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의회업무를 다른 부서로 이관시키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타시도에서도 대부분 정책부서에서 관할하고 있음

5. 토론요지

- 가. 찬성 : 최용덕, 박종우, 이강호, 구재용, 박승희, 이영환, 제갈원영 위원
- 나. 반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사항

- 없음

- 붙임 : 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관계법령 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지역교육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을 “(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2호나목 본문 및 마목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역교육청” 을 각각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⑤ 인천광역시교육감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⑥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자목 및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지역교육청” 을 각각 “교육지원청” 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제6호 중 “지역교육청” 을 각각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⑦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설공사 부실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⑧ 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지역교육청” 을 각각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⑩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⑪ 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 을 “교육지원청” 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u>지역교육청</u>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u>지역교육청</u>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4조(<u>지역교육청</u> 하부조직의 설치 등) <u>지역교육청</u>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u>지역교육청</u>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p>	<p>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 <u>교육지원청</u>----- ----- <u>교육지원청</u>----- ----- -----.</p> <p>제4조(<u>교육지원청</u> 하부조직의 설치 등) <u>교육지원청</u> ----- ----- <u>교육지원청</u> ----- ----- -----.</p>

【붙임2】

관련법령

<p>관계법령 및 참고자료</p>	<p>□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p> <p>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12.30></p> <p>②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p> <p>③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p> <p>④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12.30></p> <p>[제목개정 2013.12.30.]</p>
----------------------------	---